

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-

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3. 3.

2. 발의자: 박종길 의원(대표발의)

3. 제안이유

-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등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기본계획 수립,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안 제6조)
- 생태관광위원회 설치,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안 제11조)
- 생태관광지 지정·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- 생태관광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)

5. 참고사항[관계법령]

- 관계법령
 -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, 제4조, 제41조
 -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

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환경보전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
- 자연자산 보전 및 생태관광 육성을 통해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입법취지에는 동의함.
 - 다만, 제2조(정의)의 제2호 생태관광지 정의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,
 - 제7조(생태관광위원회 설치) 및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규정은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 시 행정안전부 「위원회 정비 지침」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으므로 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삭제하였으며, 그에 따라 제9조(위원장의 직무), 제10조(회의 등), 제11조(수당 등) 규정을 삭제함.
 - 제13조(생태관광지원센터) 규정은 향후 건립할 생태관의 기능과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이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,
 - 제14조(시행규칙) 규정은 규칙은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함.

7. 수정내용

| | | |
|---|--|--|
| <p>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| <p>---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----- -----.</p> | |
| <p><u>제7조(생태관광위원회의 설치)</u>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양성평등기본 조례」 제12조를 준용한다.</p> <p>1.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</p> <p>2. 시민단체, 환경단체,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p> <p>3. 관계 공무원</p> <p>4.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</p> <p>5.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</p> <p>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<p>필요 시 행정안전부의 「위원회 정비지침」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므로 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</p> | |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| | |
| 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</p> <p>1.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</p> <p>2.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</p> <p>3.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| <p><삭제></p> | <p>필요 시 행정안전부의 「위원회 정비지침」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에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므로 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</p> |
| <p>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| <p><삭제></p> | <p>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</p> |
| <p>제10조(회의 등) 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,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</p> | <p><삭제></p> | <p>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</p> |

| | | |
|--|--|---|
| <p><u>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생태관광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| | |
| <p><u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| <p>생태관광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</p> |
| <p><u>제12조(생태관광지 지정·육성)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</u></p> | <p><u>제7조(-----)</u></p> <p>-----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 <p>조항 변경</p> |

| | | |
|---|---|--|
| <p><u>수 있으며, 지정 절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u></p> | 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 |
| <p><u>제13조(생태관광지원센터)</u></p> <p><u>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| <p>향후 건립할 생태관의 기능과 종복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 시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</p> |
| <p><u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| <p><u><삭제></u></p> | <p>규칙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사항으로 규정 불필요</p> |